

[]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
[]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발행번호	제 호	처리기한: 즉시
신청인 (양도인)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)
	③ 주소	(전화번호 :)
	④ 구분 [] 재외국민 [] 외국인	
등기권리자 (양수인)	⑤ 성명 (법인명)	⑥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⑦ 주소	(전화번호 :)
⑧ 등기원인		⑨ 양도계약일자

부 동 산 등 양 도 내 용				
⑩ 부 동 산 소 재 지	⑪ 종 류	⑫ 면적(㎡)	⑬ 양도지분	⑭ 잔금일자

「소득세법」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또는 대리인 주소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위와 같이 부동산등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
년	월	일
세무서장 [인]		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 제출 서류	1.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(별지 제84호서식)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별지 제84호의4서식) 1부 2.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1부 3. 자본적 지출액·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(세금계산서 등) 1부 4.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.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유 의(안 내) 사 항

1.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.
2.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사용하기 전에 부동산등 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.

작 성 방 법

1. 양도자,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습니다.
2.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.
3.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양수자 1인만 작성합니다.
4. ②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,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,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5. ⑧등기원인란은 매매, 대물변제, 교환, 현물출자, 공매, 경매 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수용 등을 적습니다.
6. ⑨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.
7. ⑩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습니다.
8. ⑪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습니다.
9. ⑫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습니다.
10. ⑬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11. ⑭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(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, 교환계약체결일,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).
12.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